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金容錫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4월 30일
발 의 자 : 김용석(도봉), 김동율, 서윤기
신건택, 이숙자, 김종욱,
맹진영, 문상모, 박양숙,
김진철, 이윤희, 김경자 의원
(12명)

1. 제안이유

-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, 택시요금 및 도시철도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,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큼.
- 그러나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요금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.
-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정을 바로잡고 대중교통요금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없음.

다. 기 타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10조(의견청취) ① <u>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10조(의견청취) ① <u>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20px 0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김 용 석